

2023.7-8월 4대법령 개정사항 수정문(8.20일부)

비상대비에 관한 법률, 예비군법 : 개정사항 없음.

민방위 기본법

법률 : 개정사항 없음

시행령

67쪽

제55조(민방위 경보)

①~② (현행과 동일)

③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·면장·동장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
<개정 2023. 8. 8.>

④ (현행과 동일)

20-21쪽 (별표1 개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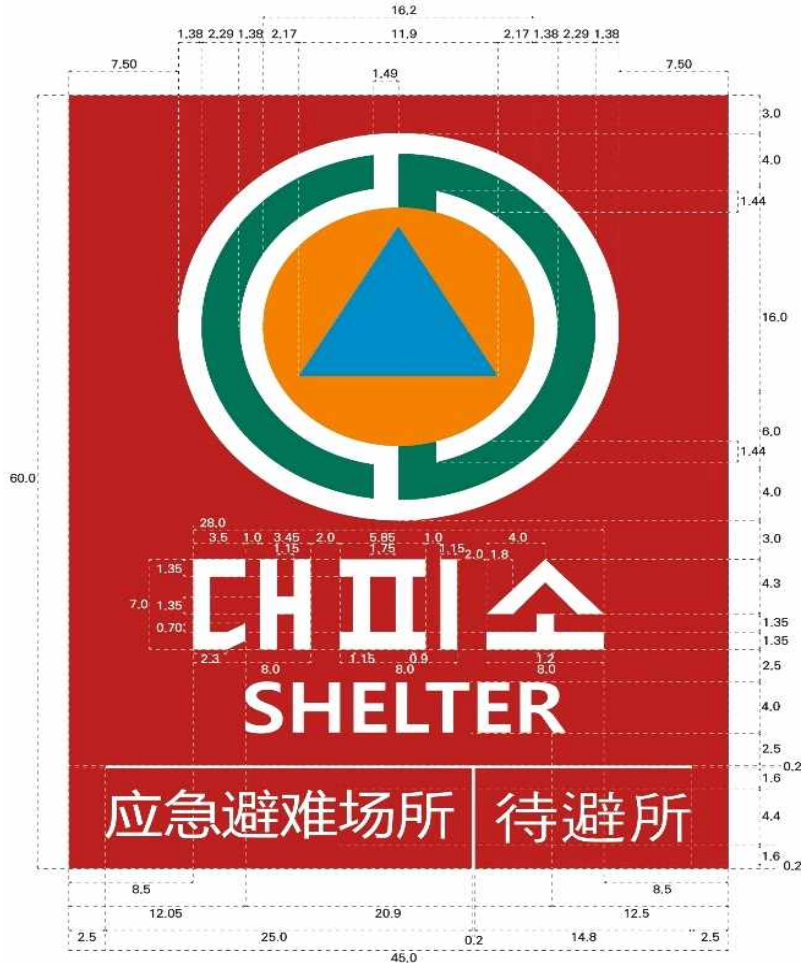
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23. 8. 8.>

비상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(제15조의2 관련)

1.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

가. 안내표지판 형태

1) 도안



비고: 외국어 병행 표기는 영어, 중국어, 일본어를 기본으로 하되,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2) 판의 재질: 철판 또는 아크릴

3) 색깔

가) 바탕: 빨간색

나) 삼각: 파란색

다) 원: 주황색

라) 민방위 표지장 영어 약자: 녹색

마) 테두리선(안쪽, 바깥쪽): 흰색

바) 글씨 표시: 흰색 야광

나. 설치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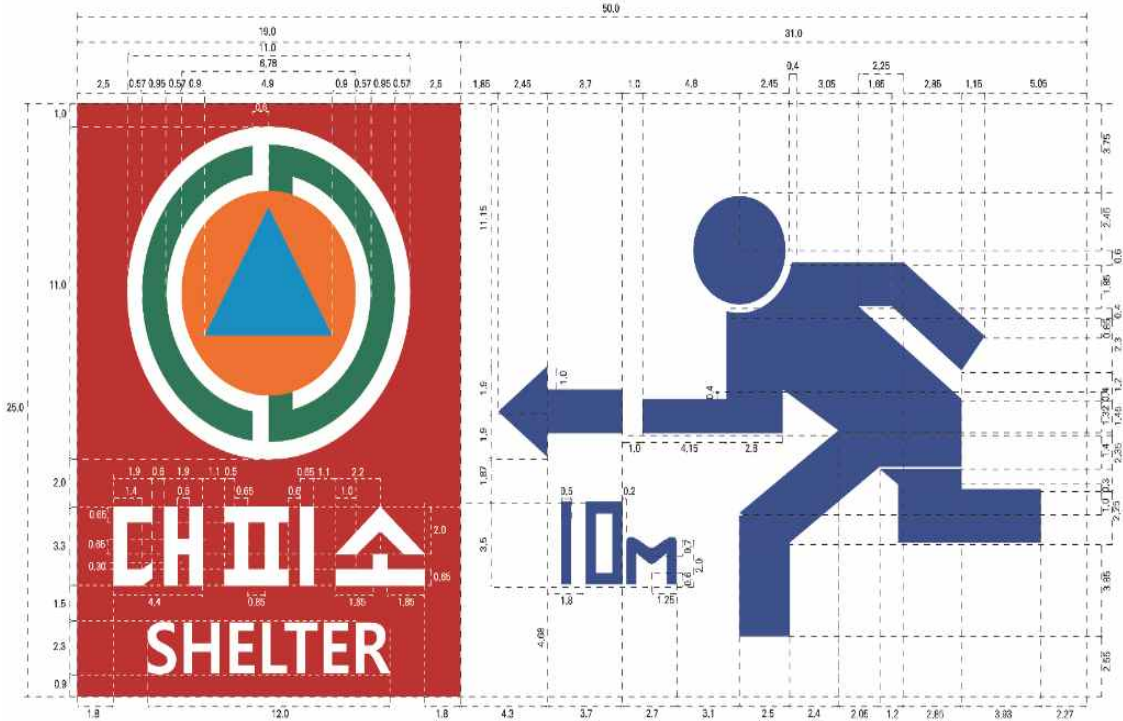
1) 받침대를 세울 경우에는 지상에서 60cm 높이에 설치 또는 부착한다.

2) 표지판의 크기는 표준규격을 원칙으로 하되,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2. 비상대피시설 유도표지판

가. 유도표지판 형태

1) 도안



비고: 외국어 병행 표기는 영어를 기본으로 하되,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2) 판의 재질: 철판 또는 아크릴

3) 색깔

가) 바탕: 흰색

나) 글씨(대피소, SHELTER)와 방향표시를 제외한 안내표지판(이하 “안내표지 모형”이라 한다):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과 동일

다) 안내표지 모형 아래에 적는 글씨(대피소, SHELTER): 흰색 야광

라) 대피유도 모형(사람 모양)과 글씨(10m) 및 방향표시: 파란색

나. 설치방법

1) 유도거리는 설치위치 또는 부착위치에 따라 10m에서 50m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2) 받침대를 세울 경우에는 지상에서 2m 높이에 설치 또는 부착한다.

3) 화살표는 비상대피시설을 가리키되, 설치위치 또는 부착위치에 따라 안내표지 모형과 대피유도 모형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.

4) 표지판의 크기는 표준규격을 원칙으로 하되,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5) 바탕을 제외한 부분은 야광도료로 처리한다.

[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]

법률 : 개정사항 없음

시행령

124쪽

제55조(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) ①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2항에 따른 부단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며, 중앙통제단에는 대응계획부·
현장지휘부 및 자원지원부를 둔다. <개정 2023.8.8.>

133쪽

제65조(긴급구조지휘대 구성·운영)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는
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8.8.>

-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|
| 1. 현장지휘요원 | 2. 자원지원요원 |
| 3. 통신지원요원 | 4. 안전관리요원 |
| 5. 상황조사요원 | 6. 구급지휘요원 |

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(2023.08.20. 검색)

제5조(국고의 지원 대상) ① 제4조제1항제1호·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를 말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시·군·구”라 한다)의 피해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. <개정 2023. 6. 13.>

1.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.1 미만인 시·군·구: **20억원**
2.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.1 이상 0.2 미만인 시·군·구: **26억원**
3.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.2 이상 0.4 미만인 시·군·구: **32억원**
4.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.4 이상 0.6 미만인 시·군·구: **38억원**
5.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.6 이상인 시·군·구: **44억원**

제7조(국고의 추가지원) 법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표1과 별표3의 부담률에 따라 산출한 지방비 총부담액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8.5.8>

1.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: 제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**2.5배**
2.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 제69조제1항제1호의 2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: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**4분의1**

제73조의3(복구비 등의 선지급 비율 등) ① 법 제66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3.8.8.>

- 1. 자연재난의 경우: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

제4조(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)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가.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
- 나. 주택이 소파(小破,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·반파(半破)·전파(全破)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·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과 주택이 반파·전파·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(세입자를 포함한다)에 속한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
- 다. 주생계 수단인 농업·어업·임업·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<추가>
- 라.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<추가>

2.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

- 가. 주택 복구
- 나. 농경지 및 염전 복구
- 다. 농림시설·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
- 라.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(入殖)
- 마. 어선과 어망·어구의 복구
- 바.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

제73조의7(안전정보의 수집·공개·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~ ⑧ <삭제 2023.8.8.>

제71조(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)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·실험·조사·기술개발(이하 "연구개발사업"이라 한다)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제77조 삭제 <2012.8.23>

제78조(국제공동연구의 촉진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재난·안전관리 분야 과학기술 진흥시책의 하나로 재난·안전기술 및 재난·안전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재난·안전기술 및 재난·안전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·연구
2. 재난·안전기술 및 재난·안전산업에 관한 인력·정보의 국제교류
3. 재난·안전기술 및 재난·안전산업에 관한 전시회·학술회의의 개최
4. 재난·안전기술 및 재난·안전산업의 해외시장 개척
5.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8조의2(연구개발사업 등의 협의·조정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(이하 "연구개발사업"이라 한다)과 법 제71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·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8. 8.>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·조정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1.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단계별 투자방향, 중점개발 기술분야, 기대효과 등 중장기 정책 자료
2.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사업목표, 사업내용, 사업기간, 사업규모 등 세부적인 사업 추진 자료
3. 그 밖에 효율적인 협의·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<신설 2023. 8. 8.>

☞ 정부출연금 :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직접 수행이 어려거나 민간이 대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될 경우,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

☞ 정부출자금 : 정부가 출자라로서 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하며, 출자 지분을 갖게 됨에 따라 이자배당등 출자수익을 얻음

제83조의2(정보 제공 요청 방법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, 팩스 또는 정보 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. <개정 2023. 8. 8.>

1.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법 제7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
2.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4조의3제7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

② 법 제74조의3제1항·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전자우편,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중앙대책본부장, 지역대책본부장,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 <개정 2023. 8. 8.>

- ③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·긴급구조기관·긴급구조지원기관,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

제83조의2(정보 제공 요청 방법 등)

③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7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8. 8.>

1. 재난관리책임기관
2. 긴급구조기관
3. 긴급구조지원기관
4.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

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7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 조 제3항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.<개정 2023. 8. 8.>

⑤ 중앙대책본부장,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법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.

- ④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 1.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
 2.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
 3.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

제83조의2(정보 제공 요청 방법 등)

- ⑥ 법 제7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 1.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
 2.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
 3. 정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을 것
 4. 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
 5.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조치를 할 것
 6.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
 7. 정보의 수집, 이용, 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
- ⑦ 법 제74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·팩스·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.
-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,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

[본조신설 2020. 6. 2.]

- 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
 - ☞ 재난피해자들의 수집된 정보를 재난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종료시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.
-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다.
- ⑦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기지국(「전파법」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 중 기지국을 말한다) 접속 정보의 제공을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,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<신설 2023.5.16.> <시행 2023.8.17.>

- ⑧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·긴급구조기관·긴급구조지원기관,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<신설 2023.5.16.> <시행 2023.8.17.>

- ⑨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및 제7항에 따른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,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·범위 및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개정 2023.5.16.> <시행 2023.8.17.>

- 제74조의4(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등)**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·연계·분석·활용·공유·공개(이하 “수집등”이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
 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83조의3(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)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(이하 “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.

-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의 최신성 및 정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재난안전데이터에 대하여 오류의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23. 8. 8.]
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,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83조의4(재난안전데이터센터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센터(이하 “재난안전데이터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.

② 재난안전데이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·연계·분석·활용·공유·공개(이하 “수집등”이라 한다)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
2. 재난안전데이터 수집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
3.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
4. 재난안전데이터 활용기술의 개발
5.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수행
6.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교육 및 민간과의 협력
7. 그 밖에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에 필요한 사항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센터 내에 수집·저장된 재난안전데이터 및 그 분석결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. **[본조신설 2023. 8. 8.]**
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,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, 데이터 제공의 대상·범위 및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설 2023.5.16.> <시행 2023.8.17.>

제83조의5(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 협의회(이하 “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1. 재난관리정보, 재난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(이하 “재난안전정보”라 한다) 공동이용의 목표, 방법, 추진전략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
2. 재난안전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
3. 재난안전정보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재난안전정보의 수집·공개·관리 및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83조의5(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)

- ③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.
- ④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1.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재난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(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,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)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
 - 가.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
 - 나. 소방청,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
 - 다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
 2. 시·도의 재난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일반직지방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·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
 3. 재난안전정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
-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⑥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에 제4항제1호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, 시·도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(이하 “실무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- ⑦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-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3. 8. 8.]

제75조(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83조의6(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) ①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은 해당 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·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명을 임명할 수 있다.

제83조의3-> 제83조의6

2023.5-6월 4대법령 개정사항 수정문(6.27일부)

비상대비에 관한 법률(시령령 포함) : 없음

예비군법 : 개정사항 없음

예비군법 시행령

제16조(소집통지서의 전달등) ①~③(현행과 같음)

- ④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“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. <신설 2023. 6. 7.>
1. 소집통지서 사본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
 2. 소집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을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
 3. 소집통지서 촬영물[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(이하 “전자문서”라 한다)를 포함한다]을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
 4.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(훈련 소집기간, 훈련장소 및 훈련장소 도착시간은 포함되어야 한다)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
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(훈련 소집기간, 훈련장소 및 훈련장소 도착시간은 포함되어야 한다)을 알리는 방법

④항 신설에 따라 기존 ④, ⑤, ⑥항 -> ⑤, ⑥, ⑦항으로 변경

제2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제2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의 관리·운영 및 **법 제15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**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한다.

<개정 2023. 6. 7.>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5조의2(과태료) ①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**국방부장관**이 부과·징수한다. [본조신설 2022. 12. 13.] [시행일: 2023. 6. 14.]

제3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**별표**와 같다. [본조신설 2023. 6. 7.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9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**3년**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**둘 이상** 있었던 경우에는 **높은** 차수를 말한다)의 **다음** 차수로 한다.

다. 수임군부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**2분의 1**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수임군부대의 장은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**2분의 1**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**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**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(단위: 만원)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파기한 경우	법 제15조의2 제1항	30	50	100

민방위기본법 시행령

제3조(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) ① ~② (현행과 동일)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23. 4. 11.>[시행 2023. 6. 5]

1.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부장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외교부장관, 통일부장관, 법무부장관, 국방부장관, **국가보훈부장관**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, 환경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, 여성가족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중소벤처기업부장관
2. 국가정보원장 2022상
3. **국가보훈처장 (삭제)**, 경찰청장, 인사혁신처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, 해양경찰청장, 소방청장
☞ 병무청장 X, 법제처장 X 2021하, 경찰위원회위원장 X 2023상
4. 삭제 <2015.7.24.>

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

제2조(기본이념)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, 모든 국민과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
<개정 2023.5.16.> <시행 2023.8.17.>

제3조(용어의 정의)

1~12(현행과 동일)

13. “재난안전데이터”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. <신설 2023.5.16.> <시행 2023.8.17.>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<개정 2023.5.16.> <시행 2023.8.17.>

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1~5 (현행과 같음)

5의2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

<신설 2023.5.16.> <시행 2023.8.17.>

법제74조의 3(정보제공 요청등)

①~⑥ (현행과 동일)

- ⑦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기지국(「전파법」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 중 기지국을 말한다) 접속 정보의 제공을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,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<신설 2023.5.16.> <시행 2023.8.17.>

- ⑧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·긴급구조기관·긴급구조지원기관,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<신설 2023.5.16.> <시행 2023.8.17.>

- ⑨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및 제7항에 따른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,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·범위 및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3.5.16.>

제74조의4(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·연계·분석·활용·공유·공개(이하 “수집등”이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
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,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,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, 데이터 제공의 대상·범위 및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설 2023.5.16.> <시행 2023.8.17.>

제80조(벌칙)

1~2(현행과 같음)

3.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7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<신설 2023.5.16.> <시행 2023.8.17.>

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

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은

1. 영제43조의12(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) 은 삭제되었고
2. 2023.6.27.일부로 법제69조 재난원인조사 파트는
영제75조의3(재난원인조사 등) 은 신설 및 개정조문이 많고
영제75조의4(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) 가 신설되어
수정문을 통째로 출력하여 교체내용과 교체해주시기 바라고
3. 영제80조의2(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실태 조사·분석 등)이 신설되었습니다.

제4조(긴급구조지원기관) 법 제3조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. <개정 2017. 7. 26>

1. 교육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국방부, 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방송통신위원회, 경찰청, 산림청, **질병관리청** 및 기상청 <개정 2023.6.27.>

이하 생략

제5조 : 삭제 <2014.2.5>

제16조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) ① 현행과 동일

<개정 2022. 8. 23.>

1. 현행과 동일

가. 현행과 동일

나. 조달청, 경찰청, 소방청, 문화재청, 산림청, **질병관리청**,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<개정 2023.6.27.>

다. 현행과 동일

제34조의8(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·운영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하며, 재난관리책임기관·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**재난관련기관**”이라 한다)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 2019하

제43조의12(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) 삭제 <2023. 6. 27.>

제69조(재난원인조사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·분석·평가(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위기 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. 이하 "재난원인조사"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,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(이하 "재난원인조사단"이라 한다)을 편성하고, 이를 현지에 파견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17.1.17.>

1.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·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재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
2.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재난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체계적인 재난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

제75조의3(재난원인조사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 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75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 실시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조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75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6. 27.>

② 법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”이란 다음 각 호의 재난을 말한다. <개정 2023. 6. 27.>

1.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,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·운영하게 한 재난
3.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

③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(이하 “재난원인조사단”이라 한다)은 재난원인조사단의 단장(이하 “조사단장”이라 한다)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한다. <개정 2023. 6. 27.>

④ 조사단장은 제5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조사단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. <신설 2023. 6. 27.>

제75조의3(재난원인조사 등)

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단원을 선발한다.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조사단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.

<개정 2023. 6. 27.>

1. 행정안전부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
2.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
3.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해당 재난 및 사고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
4. 발생한 재난 및 사고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5. 그 밖에 재난원인조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⑥ 조사단장은 조사단원을 지휘하고,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을 총괄한다.

<개정 2023. 6. 27.>

⑦ 재난원인조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, 본조사의 경우 조사단장은 재난발생지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정밀분석을 하도록 하거나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6. 27.>

⑧ 재난원인조사단은 최종적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, 조사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그 조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6. 27.>

1. 조사목적, 피해상황 및 현장정보
2. 현장조사 내용
3. 재난원인 분석 내용
4. 재난대응과정에 대한 조사·분석·평가(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)에 대한 내용
5. 권고사항 및 개선대책 등 조치사항
6. 그 밖에 재난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

- ③ 재난원인조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* 중앙위원회 보고 X 2021하 / 국회의장 보고 X **2023상**

제75조의3(재난원인조사 등)

- ⑨ 재난원인조사단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이 조 제6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**3개월** 이내에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<개정 2023. 6. 27.>
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소속직원의 파견(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요청의 경우로 **한정**한다), 관계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<개정 2017.1.17.>

-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원인조사 결과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거나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권고 등에 따른 **조치계획**과 **조치결과**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.17.>

제75조의3(재난원인조사 등)

- ⑩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**1개월**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6. 27.>

1. 개선권고 사항별 추진계획
2.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법령 등 제도개선 계획
3.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·방법·절차 등 업무 체계 개선 계획
4.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교육·훈련·점검·홍보 등 안전문화 개선 계획
5.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예산·시설·인력 등 인프라 확충 계획

-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한 사항에 관하여 매년 그 조치결과를 점검·확인하고, 점검·확인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6. 27.>

- ⑫ 행정안전부장관은 유사한 재난 및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하여금 과학적인 재난원인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6. 27.>

제75조의3(재난원인조사 등) 계속

⑬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23. 6. 27.>

1. 재난이나 사고와 관련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
2. 다른 법령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해당 재난이나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

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항제2호에 해당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<신설 2023. 6. 27.>

⑮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조사기구의 편성 및 조사 방법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6. 27.>

⑯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난원인조사반의 구성·운영·권한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며, “재난원인조사단”은 “재난원인조사반”으로, “조사단장”은 “조사반장”으로, “조사단원”은 “조사반원”으로 본다. <개정 2023. 6. 27.>

⑰ 재난원인조사와 관련한 조사·연구·자문 등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·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<개정 2023. 6. 27.>

⑱ 제1항부터 제1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및 개선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,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23. 6. 27.>

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원인조사단의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제출·보고하여야 한다.

⑦ 재난원인조사단의 권한,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5조의3(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결과의 보고 등) : 삭제 < 2018.1.18>

제75조의4(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(이하 “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1.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에 관한 사항
2.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원인조사 결과의 검토에 관한 사항
3. 제75조의3제11항에 따른 조치결과 점검·확인 및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·보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원인조사와 관련하여 심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(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,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)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
가.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행정안전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환경부, 고용노동부,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

나. 경찰청, 소방청, 산림청 및 질병관리청

다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

2. 재난원인조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⑤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[본조신설 2023. 6. 27.]

제75조의4(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)

- ⑥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에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협의회(이하 “분과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분과협의회의 심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심의로 본다.
- ⑦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,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에 제4항제1호 각 목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(이하 “실무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- ⑧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, 분과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-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, 분과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3. 6. 27.]

법제72조(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)
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0조의2(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실태 조사·분석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실태를 조사·분석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·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재난현장 및 안전관리분야에서의 활용 실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3. 6. 27.]